

의정부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3가단1630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나5532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3가단163041 판결

전문

원고 A

피고 B

변론 종결 2015. 5. 12.

판결 선고 2015. 8.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6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처인 D와 사이에 원고(장녀), E(장남), F(차남)을 두고 있었고, 원고의 남편은 G이며, F의 처는 피고이다.

나. C, G, H, I는 1998. 2. 2.경 구 남양주시 J 임야 34,314㎡(이하 '종전 임야'라고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5. 종전 임야에 관하여 각각 1/4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C은 2004. 8.경 폐암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남양주시 K 소재 L병원의 입 · 퇴원을 반복하다 2004. 10. 23. 다시 L병원에 입원하였고, 2004. 11. 14. 사망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의 남편인 F은 C이 L병원에 입원 중이던 2004. 11. 9. 종전 임야 중C의 지분(1/4)에 관하여 2004. 11. 5.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2004. 11. 5.자 증여계약서(갑 제23호증 제2면)에 "증여인 C이 위 지분을 수증인 F에게 증여한다."는 기재와 함께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필증 멸실에 관한 확인서면(갑 제23호증 제4면)에는"법무사 M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였다."는 기재와 함께 C의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마. 이후 F은 2009. 11. 3. 피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2009. 10.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4. 10.경 사망하였다.

바. 종전 임야는 2013. 2. 4.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종전 임야도 '이 사건 임야'이라 한다)으로 분할등기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5, 23,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은 처인 피고와 함께 C이 입원한 L병원을 수시로 드나들며 C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음을 기회로 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임의로 증여계약을 작성하고, 의식이 없는 C의 팔을 들어 등기필증 멸실에 관한 확인서면에 우무인을 날인하였으며, C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이에 기하여 2004. 11. 9.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1/4)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니,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의 원인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2009. 11. 3. 경로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1/4)에 관하여 2/9 지분비율로 법정상속한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위 1/4 지분에 관하여 F 명의 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F은 위 1/4 지분을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이 C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임의로 증여계약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사실 및 갑 제8호증, 을가 제2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남편인 G은 1998. 2. 2.경 C 등과 함께 이 사건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원고 역시 C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C이 2004. 11. 14. 사망한 이후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D, 원고, E, F은 2005. 1. 10.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위 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대상으로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당시 F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약에는 응하되 그 대상이 된 부동산을 상속받지 않기로 하였던 점, ③ G은 2006. 7.경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G)을 포함한 I, H, F의 공동소유(각 지분비율

1/4)이고, 그 개발행위로 인한 모든 수익은 각 공유권자에게 지분비율대로 귀속되며, 그 개발행위로 인한 제 비용도 공유권자의 지분비율대로 공동 부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는 늦어도 2005. 1. 10.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위 지분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2013. 1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할때까지 약 9년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6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증여계약서가 C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에 기하여 마쳐진 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률상 추정력이 복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준

[별지]

부동산 목록

1. 남양주시 N 입야 19,508㎡
2. O 입야 11,667㎡
3. P 입야 3,139㎡. 끝.